

[금현물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을 매매거래(이하 '금 현물거래'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을 매매거래(이하 '금 현물거래'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정비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 현물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9 (생략) 10."금지금공급사업자"란 한국예탁결제원에 ~ (이하생략)가~나 (생략) 다. 적격금지금유통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국내금을 금 현물시장 밖에서 매입하거나 적격금지금 생산업자에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금지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해당 적격금지금 생산업자에게 생산을 위탁하여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 11. "산업용계좌"란 산업용주문이 가능한 계좌로서 고객이 자신이 실물사업자임을 증빙하고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2. (생략) 13. "산업용주문"이란 산업용 계좌를 통한 주문으로써 시가단일가매매 또는 종가단일가매매시 주문가격이 동일할 경우 투자용 계좌를 통한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되는 주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 현물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9 (현행과 동일) 10."금지금공급사업자"란 한국예탁결제원에 ~ (현행과 동일)가~나 (현행과 동일) 다. 적격금지금유통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국내금을 금 현물시장 밖에서 매입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거나 적격금지금 생산업자에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금지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해당 적격금지금 생산업자에게 생산을 위탁하여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 11. "산업용계좌"란 산업용주문이 가능한 계좌로서 고객이 자신이 실물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2. (현행과 동일) 13. "산업용주문"이란 산업용 계좌를 통한 주문으로써 시가단일가매매 또는 종가단일가매매시 주문가격이 같을 경우 투자용 계좌를 통한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되는 주문을 말한다.	문구정비
제3조(계좌설정) ①~② (생략) ③ 고객이 산업용주문이 가능한 산업용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자신이 실물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좌설정) ①~② (현행과 동일) ③ 고객이 산업용주문이 가능한 산업용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자신이 실물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구정비

제6조(위탁의 방법 등)①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거래단위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가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가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생략) (신설) ㉔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가타와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방법 등)①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거래단위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Fa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현행과 동일)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금 현물 거래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KRX 금시장 운영규정 반 영 및 문구 정비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안내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동일)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해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를 통하여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문구정비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① (생략)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바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라 (생략)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현행과 동일)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팩스(Fax) 다~라 (현행과 동일)	문구정비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사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이하 생략) 1.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바치한 경우 2.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바치한 경우	제10조(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현행과 동일) 1.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갖추어 둔 경우 2.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갖추어 둔 경우	문구정비
제11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계좌개설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계좌개설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구정비
제12조(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금 현물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위탁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② 회사는 고객이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인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제12조(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금 현물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위탁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② 회사는 고객이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인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문구정비
제13조(보관, 인출 및 부가가치세 납부) ③ 고객은 보관 중인 금에 대하여 인수도단위(1kg 또는 100g)의 금지금으로만 인출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제13조(보관, 인출 및 부가가치세 납부) ③ 고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에 대하여 종목별 인수도단위(1kg 또는 100g)로 인출할 수 있으며 ~(현행과 동일)	문구정비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구정비 및 면책 사유 삭제(15 조 신설)
(신설)	제15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문신설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하 생략)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현행과 동일)	문구정비 및 조문정비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④ (현행과 동일) ⑤ 회사는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임의매매의 금지) (생략)	제17조(임의매매의 금지) (현행과 동일)	조문정비
제17조(투자유의사항) (생략)	제18조(투자유의사항) (현행과 동일)	조문정비
제18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0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문구정비 및 조문정비
제20조(분쟁조정) (생략)	제21조(분쟁조정) (현행과 동일)	조문정비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요청사항 반영 및 조문정비
(신설)	부 칙 이 약관은 2025 년 8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추가